

27 더불어 발전하는 대·중소기업 상생 협력 (중기청)

□ 과제목표

-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 보호
- 공정거래 환경 조성, 대·중소기업 간 성장모델을 통한 상생협력 기반 구축

□ 주요내용

- (대·중소기업 사업영역 조정) '18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 중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('17년 중 특별법 제정)
 - 적합업종 사업조정의 권고기간 연장, 전용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적합업종 지정제도 실효성 제고
- (복합쇼핑몰 영업제한) '18년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하여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
- (중소기업 교섭력 강화) 중소기업단체 '불공정행위 신고센터' 설치·운영 지원 및 단계별 확대*
 - * '18년 중소기업 단체 등 15개소 → '19년 중요업종 대상 40개소 추가
- (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) '17년에 대·중소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모델 개발, '22년까지 200개 기업으로 확산

□ 기대효과

- 중소제조업체 협력거래 단계별 공정성 체감도(3차 이상 전년 대비 2% 이상) 상승 ('16년 중기중앙회 조사 - 1차 협력업체 90.4%, 2차 85.6%, 3차 이상 82.4%)